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임공관장의 퇴직 전 유예기간 60일 삭제〉
■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877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취지	2
2. 주요내용 검토	2
※ 참고자료	5
1. 각 정부별 특임공관장 임명 현황	5
1. 공관장별 면직 관련 조문 비교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3인
2. 제안일자 : 2024년 11월 26일
3. 회부일자 : 2024년 11월 27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 중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임공관장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옴.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은 공관장을 면직하더라도 60일 후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2달 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게 돼 특임공관장은 퇴직할 때까지 특혜를 부여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특임공관장에 대한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삭제).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 한 후에도 6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특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삭제).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4조(특임공관장) ① ~ ③ (생략) ④ <u>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u>	제4조(특임공관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2. 주요내용 검토

특임공관장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교관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 전문가를 외교 수행상 필요에 의해 특별히 임명하는 공관장¹⁾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음²⁾.

1) [참고자료 1] 각 정부별 특임공관장 임명 현황

특임공관장은 외무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특수한 공무원으로서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무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채용시험, 자격심사, 정년 등 일부 규정은 특임공관장에게 적용되지 않음.

현행법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 퇴직하도록 되어 있어 동 기간 동안 급여, 수당 등을 지급 받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8명의 특임공관장에게 퇴직유예 기간 동안 총 약 11억 9천만원의 급여 등이 지급되었음.

< 퇴직 유예기간 동안 특임공관장 급여 등 지급 현황 >

퇴직연도(년)	퇴직인원(명)	지급 총액(원)
2020	-	-
2021	15	297,833,670
2022	20	410,264,350
2023	17	363,773,790
2024	6	121,509,410
계	58	1,193,381,220

※ 자료 : 외교부

이에 개정안은 특임공관장 면직 후 퇴직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2)「외무공무원법」 제4조(특임공관장) ①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제4항·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면직되도록 함으로써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업무 인수인계, 면직 후 재외공관장으로서의 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다른 재외공관장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의 필요성 및 적정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뿐만 아니라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직위(이하 ‘정초직위’)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³⁾에 대해서도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⁴⁾하고 있음⁵⁾.

외교부는 퇴직전 유예기간 부여는 해외 근무 공관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로써, 이임공관장의 업무 인수인계 등 필수적 활동⁶⁾을 수행하고 국내 적응 및 퇴직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제도이기에 개정이 불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270

3) '25 2월 현재 174개 재외공관장 중 33개 공관장이 특임공관장이며, 정초직위 공관장은 46개, 14등급 공관장은 13개임.

4) [참고자료 2] 공관장별 면직 관련 조문 비교

5) 제20대 국회에서 특임공관장의 퇴직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1166) 심사 시 유예기간의 필요성·적정기간 및 공관장 간 형평성에 대한 논의 결과 당시 120일이었던 14등급 공관장의 유예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안을 의결한 바 있음.

6) 「재외공관장 이부임시 행동지침(외교부예규 제77호)」에 따라, 귀임 공관장은 귀국(이임) 보고서 작성·제출, 신임공관장에 인수인계 등을 실시하고 있음.

[참고자료 1] 각 정부별 특임공관장 임명 현황

(단위 : 명)

	전문외교관 출신 공관장	비외교관 출신 공관장	계
김영삼 정부 ('93~' 97)	0	13	13
김대중 정부 ('98~' 02)	1	20	21
노무현 정부 ('03~' 07)	3	34	37
이명박 정부 ('08~' 12)	8	30	38
박근혜 정부 ('13~' 17.5)	8	25	33
문재인 정부 ('17.5~22.4)	12	58	70
윤석열 정부 ('22.5~25.1.31)	11	34	45

[참고자료 2] 공관장별 면직 관련 조문 비교

<공관장별 면직 관련 조문대비표>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공관장	여타 공관장
「외무공무원법」 제4조(특임공관장)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외무공무원법」 제26조(당연 퇴직 등)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 2019.1.15. 법 개정으로 120일 → 60일로 단축됨	「외무공무원법」 제26조(당연 퇴직 등)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